

영등포구의회
제14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5. 27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5. 21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날로 대형화·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,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,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명칭을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정함(안 제3조)
- 단장, 부단장 및 간사 등 방재단의 임원과 이들의 임무를 규정하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분할 것과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- 방재단 내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(안 제7조)
-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다른 지역 피해 지원요건과 기능에 따라 반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단원의 활동 및 확인절차 등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- 구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에 따라 식대·여비·유류비 등 단원의 필수 경비, 보험가입비, 피복비, 단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, 교육·훈련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, 사무실 및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·지원하는 등 방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방재단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방재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(안 제12조)
- 단원의 임무수행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함(안 제14조)
-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,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고, 단장은 그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(안 제15조)
-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7조)
-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함(안 제18조)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함(안 부칙)

■ 관련법규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·제61조·제62조 및 제65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강남구, 구로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하여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 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 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, 제61조(소집), 제62조(교육 및 훈련 등), 제65조(예산지원)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,
-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설치목적과 구성, 임원의 임기와 임무, 방재단의 소집과 교육 훈련, 금지사항 그리고 행정·재정적 지원 사항과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조직과 단체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, 운영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5. 27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자연재해대책법

제66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관련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·대응·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60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1조 (소집)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2조 (교육 및 훈련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5조 (예산지원)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